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 철저 이행 당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에 따라 올해 겨울 철새 등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 가축의 입식 사전신고 및 신고서 등 증명서류 검토 철저

- 전국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결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미흡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 시 미흡사항 보완여부 등 확인 철저
 - 가금농가 점검결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닭, 오리의 사전입식신고 시 붙임서류인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검토
- ⇒ 입식사전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 또는 거짓이 있거나, 필요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①입식하려는 가축을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②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 ③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이후 신고접수

※ 입식사전신고서 보완요청 시 하자있는 신고이므로, 증명서류를 보완하여 입식신고를 다시 해야함과 입식사전신고 없이 입식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철저히 안내

* 입식사전신고없이 입식시 과태료 부과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분기 1회 이상)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확인 철저

- ⇒ 방역교육 및 점검 미 실시 과태료 부과 :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
- ⇒ 방역교육 및 점검 결과 거짓 통지 및 미통지 과태료 부과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다.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 강화

- AI발생 예방을 위해 사육시설 면적이 50㎡이상인 가금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 해당 축종, 닭, 오리, 기러기, 거위, 메추리, 꿩, 칠면조, 타조

* 방역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라. 가축의 소유자 등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확인·점검 강화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소유자 등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명확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 작동하지 않아 즉시 정비 보수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마. 특히, '20.2.4일 신설 시행된 법 제17조제9항, 제17조제10항의 조기 제도 정착되도록 가축 소유자 등,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도축장, 사료제조업자 등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집행 철저



참고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관련 조문 발췌

◎ 가축입식 사전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植: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제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 8.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2.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및 입식 규모
3. 입식 일령(日齡) 및 입식 예정일
4.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
5. 가축의 출하 예정일
6.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7.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8.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8.]

◎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교육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제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통지받은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6.>

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법
3.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4.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5.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1.]

◎ 방역 기준 준수 등

[가축전염 병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2. 2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개정 2019. 7. 1.>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가.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살펴보고 물·사료의 섭취 감소, 활력 저하 등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있는 가축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 나. 이상이 있는 가축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다른 가축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죽은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축의 사체를 수거하여 별도장소에 보관하고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라 판단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라.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의 사체나 병든 가축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축사 내부와 외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병든 가축의 격리시설과 사체 보관장소를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며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마.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 및 기록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 가.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나.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는 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 다. 농장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을 포함한다)을 비치하여야 하고 농장 전용 의복·신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라. 농장 출입구 및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 시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 마.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을 포함한다)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문자는 가급적 축사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축사에 들어갈 때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소독을 실시한 후 들어가도록 한다.
- 바.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일 또는 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사. 출입소독시설에는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 가. 야생동물, 설치류 및 그 밖의 사육가축 외의 동물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 등을 설치한다.
- 나. 사료보관통(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바로 바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다.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야생동물 등이 농장에 드나든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분변 등을 치운 다음 소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 등의 출입방지 시설을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 라. 설치류를 통한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 가. 사육 가축에는 구제역, 돼지열병 및 뉴캐슬병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올바른 접종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가축을 입식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식 또는 구매 가축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나. 가축을 거래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건강한 가축만을 거래하여야 하고, 특히 도축·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지 말아야 하며,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축의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 다.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로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라. 축사 내부·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 마.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바.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 사.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아.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자.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차.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5.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